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한 동의방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는 수집 출처 통지, 이용·제공내역 통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국외 이전을 위한 요건 등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원화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요 공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집 출처 통지(영 제15조의2)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영 제15조의3)

기준 정비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의무대상을 수집 출처 등 통지 기준과 일치시키고 통지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나.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영 제17조제1항)과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정비(영 제14조의2제2항)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상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보완함

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영 제17조의2)

일반규정(종전 영 제17조제4항)과 특례규정(종전 영 제48의3)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정비함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개선(영 제22조제1항)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 등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

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예외(영 제27조의2, 제27조의3)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영 제29조의7 ~ 제29조의13)

국외 이전의 요건에 국가·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과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국외 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영 제30조)

일반규정(중전 영 제30조)과 특례규정(중전 영 제48의2)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규정을 통합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전조치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반영하여 보완함

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특례(영 제30조의2)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별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접근 권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며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접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함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영 제31조의2, 제31조의3)

법 제30조의2 신설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차. 국내대리인의 지정(영 제32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국내대리인의 지정 규정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 의무의 대상자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함

카.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영 제33조)

법(제3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회의참석 수당 지급, 저장·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등으로 구체화함

타. 공공기관 영향평가 지정기준 정비(영 제35조 ~ 제3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할 시점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영 제39조, 제40조)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이원화되어 있는 보호위원회·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영 제51조의2 ~ 제51조의5)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분쟁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의 수락 간주 등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사실조사 원칙 및 절차, 수락 간주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방법 및 통

지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정비함

거. 과징금의 부과기준(영 제60조의2 ~ 제60조의4, 별표 1의5)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등’으로 구체화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의5의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를 구체화함

너.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영 제61조)

법률에서 공표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공표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더.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3조, 별표 2)

과태료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9. ~ 6.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가목 중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를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 휴대전화기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손쉽게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무인항공기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고정적으로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장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려”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로,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로, “미리 공개하고”를 “공개하고”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를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방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처리자”란을 “개인정보처리자“란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로, “말한다”를 “말하며,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을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알림창 등”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법 제20조의2에 따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의6을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의3(중전의 제48조의6)의 제목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으로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를 표시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집 출처 등 통지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3.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업무 수행을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4.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알림창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2호가목을 “민감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는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법에 따른 정보주체(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4.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⑥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8조의3을 제17조의2로 한다.

제17조의2(종전의 제48조의3)의 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1호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제4항”을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다음”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제30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촬영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제23조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각각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2항 후단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각각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8호 및 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을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에 의한 항

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8조제3항제4호 중 “용역”을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29조의5제1항제1호 중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4제2항”을 “법 제28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명정보의 처리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48조의10을 제29조의8로 한다.

제29조의8(중전의 제48조의10)의 제목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야”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8조의8제4항에 따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8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용자”를 “정보주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로, “국외에”를 “국외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9(국외이전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책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외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정책 자문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 등의 점검 및 분석
3. 이 영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0(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통한 해당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 평가

2. 제29조의9에 따른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

3.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협의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고시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1(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이하 '대상국등'이라 한다)를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국등의 법령, 규칙 또는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 등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 등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2. 대상국등에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준수를 보장하고 집행

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대상국등에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정보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4. 대상국등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법률적 근거, 절차 및 피해구제 등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조치의 존재 여부와 실질적 보장 여부

5. 대상국등의 감독기관이 보호위원회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6.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상국등을 인정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국등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인정 기간, 국외 이전의 조건 등을 대상국등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상국등을 인정할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국등을 인정한 경우, 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법에 따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

준이 법에 따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상국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대상국등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대상국등을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국등의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2(국외 이전의 중지 명령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위반의 중대성 정도
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기다려서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

구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 등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집행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외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른 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제기 절차 및 기간, 이의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3(국외 이전의 중지 명령 이의제기)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과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중지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제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부터 제6호(종전의 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안전한 기준의 설정·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등 인증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에 대한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특례)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를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2. 공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공공시스템에 접속한 자에 대한 접속기록의 저장·분석, 점검·관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해당 공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에 대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통지한 경우
2. 다른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내역 등과 함께 본문의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공공시스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기관, 분야, 시스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스템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해당 수탁자

3. 해당 공공기관이 참여를 요청하는 공공시스템 이용 기관

⑥ 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용역”을 “서비스”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3.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및 형태·방식
4.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행위 발생 여부
5.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제31조의3(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근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31조의2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한 경우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계획을 알려야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9를 제32조의2로 한다.

제32조의2(중전의 제4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1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이용자 수”를 “국내 정보주체의 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제33조의 제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물품·금전의 정산·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그 밖에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제34조제2항 중 “게재해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제48조의2제1항 각 호”를 “제30조의2”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제4호”를 “법 제33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의2에 따른”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삭제한다.

⑤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3.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4. 제3호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및 결론
6. 그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를 제39조로 한다.

제39조(중전의 제40조)의 제목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의 제목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하고, 제48조의8을 제40조의2로 한다.

제40조의2(중전의 제48조의8) 중 “법 제39조의10제2항”을 “법 제34조의2 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법 제39조의7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동의”로 한다.

제48조의2 앞에 “제6장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를 삭제한다.

제48조의2,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3.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

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분야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의2(조정 신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알릴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분쟁조정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2. 동일한 분쟁조정이 합의, 확정판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결정 등의 방법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

3. 당사자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였거나 조정 전 합의로 종결 처리한 사건을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알릴 때에는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같이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1조의3(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이란 보호위원회의 사무처 내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해당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조사·열람의 목적
2. 조사·열람의 기간과 장소
3. 조사·열람자의 직위와 성명

4. 조사·열람의 범위와 내용

5. 제출 자료

6. 조사·열람 거부 및 제재

7.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을 할 때에는 조사·열람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45조에 따라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자는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관련 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4(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및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준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5(조정안 등의 통지방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조정서 정본을 송달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법 제47조제3항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본문 중 “조정부”를 “조정부,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11을 제60조의2로 한다.

제60조의2(중전의 제48조의11)의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외의 부분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사업연도”를 각각 “해당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15제2항 단서”를 “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영업실적이 없거나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39조의15 제4항”을 “법 제64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매출액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의12를 제60조의3으로 한다.

제60조의3(중전의 제48조의12)제1항 중 “법 제39조의15”를 “법 제64조의

2”로 한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의13을 제60조의5로 한다.

제60조의5(종전의 제48조의13)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15제7항”을 “법 제64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결과의 공표)”를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발,”을 “과징금의 부과, 고발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위원회의”를 “보호위원회는”으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을 “공표 및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그 대상자라는”으로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것을 명할 때에는 공표의 내용·횟수·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처분 등을 받은 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처분 등을 받은 자
3.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2조제3항제8호 중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을 “(법 제34조제3항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신고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기술적 분석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민감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제2항 및 제7항”을 “제2항”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 및 제47조”를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민감정보”로 한다.

5.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제62조의3제1항제2호 중 “제48조의6”을 “제15조의3”으로, “이용내역”을 “이용·제공내역”으로 하고, 같은 호 중 “2020년 8월 5일”을 “2023년 9월 15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75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5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

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단계 및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가. 기준금액의 산정

- 1)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 2)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2차 조정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등(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부과기준율 산정 및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별표 1의5 제3호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같은 호 중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1차 조정 및 2차 조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을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로 하고, 같은 목3)을 4)로, 4)를 3)으로 하며, 같은 목 3)(종전의 4)) 중 “중소기업자인 경우”를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5)를 8)로 하며,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소비자”를 “정보주체”로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하고, 같은 목 2)(종전의 3)) 중 “정도”를 “정도·기간”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거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호	100 200	200 400	400 800
나. 법 제16조제3항·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 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2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아. 법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자. 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카. 법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타. 법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파. 법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하. 법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거. 법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	법 제75조	600	1,200	2,400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제2항제11호			
너. 법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4호	200	400	800
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5호	200	400	800
머.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버.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400	800	1,600
서. 법 제27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6호	200	400	800
어. 법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7호	200	400	800
저. 법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
쳐. 법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4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8호	200	400	800
터. 법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9호	200	400	800
퍼.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0		

허.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5호	600	1,200	2,400
고.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6호	600	1,200	2,400
노. 법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7호	600	1,200	2,400
도. 법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8호	600	1,200	2,400
로. 법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9호	600	1,200	2,400
모.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0호	200	400	800
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0호	600	1,200	2,400
소. 법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1호	600	1,200	2,400
오. 법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2호	600	1,200	2,400
조.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3호	600	1,200	2,400
초. 법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4호	600	1,200	2,400
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1호	100	200	400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400	800
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2호	200	400	800
포. 법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5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200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00	1,200	2,400
호. 법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6호	600	1,200	2,400
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7호	600	1,200	2,4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제2항 제16호·제20호·제21호·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제9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5일
2.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5일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④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① ----- -----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 ----- --			
가. 일정한 공간에 <u>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u>	가. ----- <u>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u>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u>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u>			

	2. 휴대형 장치 : 휴대전화기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손쉽게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무인항공기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고정적으로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장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
제5조(전문위원회) ① (생략)	제5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u>고려하여</u>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	② ----- ----- ----- ----- <u>고려하여</u> ----- ----- ----- ----- ----- -----

원 중에서 지명한다.

1. ~ 4. (생략)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

-----.

1. -----

-----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법 제30조----- 공개하고---

-----.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
 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
 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
 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
 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방법·절차) ① --

개인정보처리자”란 저장·관리
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
 ----- 말하며, 저장·관
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
균으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 서
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알림창 등 -----

 ----- . 다만, 법 제20
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법 제20조의2에 따라 통지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

③ -----

----- 제3
7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으로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

<신 설>

②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

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
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
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집
출처 등 통지를 통해 개인정
보 이용·제공내역을 정보주
체에게 통지한 경우

3.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처
리자의 임직원 또는 다른 개
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업무
수행을 위해 연락처 등 개인
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4.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
는 경우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
회 이상 해야 한다.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신
설>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

-----.

1. 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우편·전화
·문자전송·알림창 등 정보주
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법
에 따른 정보주체(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
확할 것

3.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
구를 사용할 것

4.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생략)

3.·4.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

가. 민감정보

나.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

-----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⑤ (생략)

<신설>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 개인정보처리
자-----

알리는 방법

2. ~ 7.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② ~ ⑤ (생략)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신설>

2. ~ 7.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

----- 제30조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촬영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 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 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 제2항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
-----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

②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
-----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

②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

----- 고정형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의 -----

-----.

1. -----

-----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 -----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③ -----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④ (생략)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2.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 ⑥ (생략)

제29조의5(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
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3. (생략)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 서비스-----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
성 확보 조치) ① -----

1. 제30조-----

2.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의4제3항-----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29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

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

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

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

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

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

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

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1. ~ 4. (현행과 같음)

5. 가명정보의 처리기간(법 제2

8조의4제2항에 따라 처리 기

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

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
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
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
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등이 법 제39조의12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은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
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
법을 말한다.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
리자가 법 제28조의8제4항에 따
라 하여야 -----
-----.

조 제4항에 따라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생략)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12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신 설>

1. 제30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3. ----- 정보주체-----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8조의8제1항 각호-----
----- 국외로 -----

-----.

<삭 제>

제29조의9(국외이전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정책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개

<신 설>

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외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정책
자문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
등의 점검 및 분석

3. 이 영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
전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이전전문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29조의10(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신 설>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을 정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통한
해당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수
준 등 평가

2. 제29조의9에 따른 국외이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3.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협의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의 고시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
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제29조의11(국가 등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인정) ① 보호
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
5호에 따라 법에 규정된 개인정
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
등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이하 ‘대상국 등’이라 한다)를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국등의 법령, 규칙 또는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 등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 등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2. 대상국등에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준수를 보장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대상국등에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정보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4. 대상국등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법률적 근거, 절차 및 피해구제 등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조치의

존재 여부와 실질적 보장 여부

5. 대상국등의 감독기관이 보호위원회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6.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상국등을 인정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국등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인정 기간, 국외이전의 조건 등을 대상국등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상국등을 인정할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국등을 인정한 경우, 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법에 따른 수준과 실

<신 설>

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법에 따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상국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대상국등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대상국등을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국등의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2(국외 이전의 중지 명령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위반의 중대성 정도
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를 기다려서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 등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집행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신 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외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 제1항에 따른 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제기 절차 및 기간, 이의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3(국외 이전의 중지 명령 이의제기) ① 법 제28조의9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과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중지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제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

-----.

1. -----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사항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한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신 설>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접근 권한의 제한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
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
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
장·관리되고 있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4호의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
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
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
한 조치

<신 설>

화 등 인증정보에 대한 암호
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안전한 관리에 필요
한 조치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
는 경우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

----- 위
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
속한 자에 대한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5. <u>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u> 6.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u><신설></u>	<u>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u> <u>· 감독</u> <u>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u> <u>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u> 6. <u>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u>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u>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30조의2(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특례)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u>
--	--

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2. 공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공공시스템에 접속한 자에 대한 접속기록의 저장·분석, 점검·관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해당 공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에 대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통지한 경우

2. 다른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내역 등과 함께 본문의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공공시스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삭 제 3.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	공기관은 기관, 분야, 시스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스템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해당 수탁자 3. 해당 공공기관이 참여를 요청하는 공공시스템 이용 기관 ⑥ 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3. 제30조-----
--	---

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
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
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서비스-----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보호위원회는 법 제
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신 설>

및 규모

3.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및 형태·방식

4.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행위 발생 여부

5.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제31조의3(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근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u>있는지 여부</u> <u>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u>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u> <u>③ 보호위원회는 제31조의2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한 경우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계획을 알려야한다.</u> <u>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제48조의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1. <u>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u> 2. <u>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u>	<u>제32조의2(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u> ----- ----- -----. 1. ----- ----- <u>전체 매출액</u>----- ----- <u><삭 제></u>

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
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생략)

<신 설>

2. -----

----- 국내 정보주체의 수 -----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
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
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
액-----

-----.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파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물
품·금전의 정산·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
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2. <u>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u> 3. <u>그 밖에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u>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생략)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u>게재</u> <u>해야 한다.</u>	② ----- <u>게재</u> <u>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u>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u>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 <u>제30조의2</u>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

상) (생략)

<신설>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제4호-----

1. 2. (현행과 같음)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 법 제33조제2항-----

1. (현행과 같음)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생략)

⑦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3.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삭제>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
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략)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
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4. (생략)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9항-----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4항 -----

3. · 4. (현행과 같음)

②

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
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
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

-----.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에 대한 분석 · 평가

4. 제3호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
한 조치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및 결론

6. 그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
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
항제7호에 따른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

<신 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

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 -----

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
과 같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
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
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
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수
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
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
다.

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

<삭 제>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요청 기관) 법 제39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장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요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
-----.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

----- 법 제37조제1항-----
동의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
합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
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
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
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
립·시행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
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
영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
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
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

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 · 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

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

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

화 저장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

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

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

정보를 송신 · 수신하는 경

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

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

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

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

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

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

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삭 제>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해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
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
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
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
고해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지
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홈페
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

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호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삭 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신 설>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3.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연구경

<신 설>

력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1년 이
상 경력이 있는 자

5.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분쟁조
정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분야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
고 인정하는 자

④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
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3조제2
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알릴 때에는 분쟁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분쟁조정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2. 동일한 분쟁조정이 합의, 확정판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결정 등의 방법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

3. 당사자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였거나 조정 전 합의로 종결 처리한 사건을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알릴 때에는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같이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 제2

<신 설>

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1조의3(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이란 보호위원회의 사무처 내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

<신 설>

까지 해당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조사·열람의 목적
2. 조사·열람의 기간과 장소
3. 조사·열람자의 직위와 성명
4. 조사·열람의 범위와 내용
5. 제출 자료
6. 조사·열람 거부 및 제재
7.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을 할 때에는 조사·열람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45조에 따라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자는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관련 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4(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5조

<신 설>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및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준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5(조정안 등의 통지방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조정서 정본을 송달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법 제47조제3항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② (생략)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검사 대상 및 사유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수당과 여비) -----

----- 조정부,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 -----

-----.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일정, 검사 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삭 제>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사 기간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받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15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사업연도 -----

----- 해당사업연도 -----

-----.

② 법 제39조의1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생략)

<신 설>

<신 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

1. -----

영업실적이 없거나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
여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

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
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
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
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매출액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
 ----- 개인정보처리자-----
 -----.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의15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48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① 보호위원회가 법 제39조
의1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
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
과금액·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⑥ 법 제64조의2제6항-----

-----.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① ----- 법 제64조
의2-----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

기 및 분할 납부) ① 「행정기
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
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
조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를 하
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
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
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39조의1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2. (생략)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의 내용 및 결과

<신설>

법 제64조의2제9항-----

제61조(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
----- 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 -----

-----.

1. 2. (현행과 같음)

3. ----- 과징금의 부과, 고발 또는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것을 명할 때에는 공표의 내용·횟수·

②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② (생략)

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처분 등을 받은 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처분 등을 받은 자

3.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

----- 공표 및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그 대상자라는-----

--.

제62조(업무의 위탁)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신설>

9. (생략)

④·⑤ (생략)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
------(법 제34조제3항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신고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8의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기술적 분석

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민감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28조의6, 제34조의2 및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신설>

<신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제2항-----

5.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

민감정보-----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략) 2. <u>제48조의6</u>에 따른 개인정보 <u>이용내역</u>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u>2020년 8월 5일</u>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u>2020년 8월 5일</u> ② (생략)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5조의3</u>----- <u>이용·제공내역</u>----- ----- ----- <u>2023년 9월 15일</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75조</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3055